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0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4.

발의자 : 윤준호 · 최인호 · 권칠승
이상현 · 전재수 · 오영훈
신창현 · 서삼석 · 서형수
박재호 · 김정호 · 박광온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,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,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자체 없이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

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유해생물 관리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유해생물 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